

## 공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하고,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와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 그리고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제도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기능을 저하하고 그들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손상시키며 부의 격차와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며 국제 상거래·무역·투자를 방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풍요롭고 포용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질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치주의 및 책임성은 다음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투자 환경의 개선과 공동의 번영 보장 및 ILO 선언에 기초한 노동권의 증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며 조세 행정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조세 순응도 및 국내 자원 동원력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패를 방지하며 기업(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 집단 및 지역 공동체와 같은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의 활발한 참여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장·자유무역·투자 혜택의 폭넓은 공유 보장, 그리고

다음을 추구하며,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및 기준에 합치되게 투명성을 증진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부패 조치 및 조세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이행, 집행 및 진전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 집단 및 지역 공동체와 같은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에 대한 당사자들의 참여, 포용 및 책임성 조치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 수요를 인정하며, 전문 지식과 우수 관행의 공유, 기술의 보급 및 국제 협력의 강화를 포함한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혁신적인 이행 접근법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절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방지와 척결, 조세 행정 및 준수의 개선,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에 관련된 것이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범죄에 대한 기술과 적용 가능한 법적 항변 또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적 원칙에 대한 기술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으며, 그러한 범죄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됨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의무가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됨을 인정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당사자의 당국이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배타적으로 보유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이란 공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말한다.

뇌물방지협약이란 OECD 주관하에 1997년 12월 17일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말한다.

APEC이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말한다.

CBF란 부속서 I에 규정된 역량 강화 체계를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sup>1</sup>

FATF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를 말한다.

외국 공무원이란 임명직 또는 선출직, 영구직 또는 임시직, 유급 또는 무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개인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외국의 입법·집행·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ILO란 국제노동기구를 말한다.

ILO 선언이란 2022년에 개정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를 말한다.

개인이란 자연인을 말한다.

---

<sup>1</sup> 호주의 경우, 이 협정의 목적상, 기업이란 호주의 국내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실체를 말한다.

발행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호주의 경우, 회사법(연방)(2001)의 섹션(Section) 1317AAB 제(a)항 및 제(b)항에 따라 규제되는 실체
- 나.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경우, 증권시장명령(2013)의 섹션(Section) 2에 따라 정의된 발행인
- 다. 피지공화국의 경우, 회사법(2015)에 따라 설립된 상장회사
- 라. 인도공화국의 경우, 증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증권계약(규제)법(1956)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1992)에 따른 관련 문서 및 법률문서에 따라 발행인, 예탁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임무를 맡는 인
- 마.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금융 분야 개발 및 강화에 관한 2023년 법률 제4호의 제22(1)조에 의하여 개정된 자본시장에 관한 1995년 법률 제8호의 제1(6)조에 정의된 공모를 하는 당사자
- 바.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의 제193-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발행 회사 또는 정령에 명시된 그 밖의 인
- 사. 대한민국의 경우, 증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실체. 다만, 이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2)에 따라 증권예탁증권 발행의 맥락에서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실체를 말한다.
- 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본 시장 및 서비스법(2007)(법 제671호)의 섹션(Section) 2에 정의된 발행인
- 자. 뉴질랜드의 경우, 금융시장 행위법(2013)의 섹션(Section) 461K(1) 제(a)항 및 제(c)항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금

## 융시장행위를 신고하는 실체

- 차.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공화국법 제8799호 또는 증권규제법의 섹션(Section) 3.1과 관련하여 같은 법의 섹션(Section) 3.2에 따라 정의된 증권에 대한 자산보유자, 조성자, 채무자 또는 설정자
- 카.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회사법(1967) 또는 상응하는 이전의 성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공정시세표에 허용되고 그 공정시세표에서 삭제되지 않은 회사
- 타. 타이왕국의 경우, 증권거래법 B.E.2535(1992)의 제89/1조에 따른 회사
- 파. 미합중국의 경우, 15 U.S.C. 781에 따라 등록된 증권의 종류를 보유하거나 15 U.S.C. 78o(d)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달리 요구되는 발행인, 그리고
- 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 증권법 제54/2019/QH14호에 따라 증권을 모집·발행하는 기관

노동권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ILO 선언에 규정된 다음의 권리<sup>2</sup>
  -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2)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 3)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

<sup>2</sup> 이러한 권리는 ILO 선언에 합치되게 해석된다.

4)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5)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sup>3</sup>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말한다.

**OECD**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한다.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이란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그 기구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을 말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인**이란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공무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임명직 또는 선출직, 영구직 또는 임시직, 유급 또는 무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개인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입법 · 집행 · 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를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최저임금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은 이윤분배, 상여금, 퇴직금 및 건강 보험과 같이,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이 호는 당사자의 법, 규정 및 그에 따른 관행에 그 당사자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다.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되고 그 당사자 내 법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개인, 그리고

다.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의된 그 당사자의 그 밖의 모든  
개인

공표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TACB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말한다.

TACBCG란 부속서 I의 제5항에 따라 설치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을 말한다.

UNCAC란 2003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반부패협약」을 말한다.

## 제2절

### 반부패

## 제3조

###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절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조치에 적용된다.<sup>4</sup>

2. 당사자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청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과 이와 관련하여 각 부문에 상호 보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이니셔

<sup>4</sup> 호주, 인도 및 미국의 경우, 이 협정은 연방법의 관할권 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무가 예방적인 조치와 관련되는 한도에서 연방, 주(호주의 경우, 준주를 포함한다) 및 지방 공무원을 규율하는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러한 조치에만 적용된다.

티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4. 각 당사자는 UNCAC와 적절한 경우 뇌물방지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확인한다.

5. 당사자들은 2021년 6월 2일 제32차 국제연합(UN) 총회 특별 회기에서 채택된 “부패의 방지 및 척결과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조치를 이행하는데 대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치적 선언문의 효과적인 완수를 지원한다.

#### 제4조

#####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경우, UNCAC,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그 협약의 세 개의 의정서 또는 뇌물방지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조

#####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조치의 적용과 집행

1.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뇌물 수수 범죄를 포함한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적발·수사·기소·제재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강화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의 UNCAC 조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확인한다.

가. 제7조(공공 부문) 및 제8조(공무원 행동 강령)

나. 제12조(민간 부문)

- 다. 제15조(국가 공무원의 뇌물 수수)
- 라. 제16조(외국 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와 적용 가능한 경우  
뇌물방지협약
- 마. 제17조(공무원의 횡령, 배임 또는 그 밖의 재산 유용)
- 바. 제14조(자금세탁 방지 조치) 및 제23조(범죄 수익의 세탁), 그리고
- 사. 제30조(기소, 재판 및 제재)

3.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인이 다음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공무의 수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그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것
- 나. 공무의 수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그 공무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
- 다. 국제 상거래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공무의 수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 직원이 직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그들 또는 다른 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외국 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것.<sup>5</sup> 그리고

---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 이익이 외국 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판례법을 포함한 성문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자신의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성문법 또는 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기술된 범죄의 실행을 방조 및 교사하거나 음모하는 것<sup>6</sup>

4.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록의 보존 및 내부통제, 재무제표의 공개와 회계 및 감사 기준에 관한 자신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이 조에 기술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금지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부외계좌의 개설

나. 부외거래 또는 불충분하게 확인되는 거래의 실시

다. 가공의 지출 기록

라. 대상이 부정확한 부채의 기입

마. 허위 문서의 사용, 그리고

바. 법에 정한 것보다 일찍 회계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것<sup>7</sup>

5.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인이 다음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UNCAC에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공무원이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의 혜택을 위하여 그 공무원의 직위에 기하여 그 공무원에게 위탁된 재산, 공적 또는 사적 자금이나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횡령, 배임 또는 그 밖에 유용하는 것

나.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 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인이 그 인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한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것

<sup>6</sup>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 내 적용 가능한 개념을 통하여 음모에 관한 약속을 충족할 수 있다.

<sup>7</sup> 미국의 경우, 이 항은 발행인에게만 적용된다.

다.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러한 재산의 실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것

라.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 개념을 조건으로, 수령 시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러한 재산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것

마.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 개념을 조건으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 공모 또는 음모, 미수 및 방조, 교사, 조장 그리고 조언하는 것

6. 각 당사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자신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는 제재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외국의 뇌물 수수 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제재는 자신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뇌물의 액수, 이익의 가치 또는 파생된 그 밖의 혜택과 그 밖의 경감 또는 가중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각 당사자는 제3항에 기술된 뇌물, 그리고 자신의 세법에 합치되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범죄 실행의 조장에서 발생한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8. 각 당사자는 기업과 개인 모두와의 형사, 행정 또는 민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체계를 갖춘 비재판적 해결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의 사용을 적절한 경우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이 항의 목적상, 비재판적 해결책은 인과 기소 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 간의 협상에 의한 합의에 기초하여 재판 없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 및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9.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인 지불의 요구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신의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신의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인다.

10. 각 당사자는 국제 상거래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이 되고자 출마하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개인의 뇌물 수수를 범죄화하는 것을 적절한 경우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당사자들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가 있는, 그러한 개인의 뇌물 수수는 그 개인이 취임하는 경우 우수한 거버넌스를 약화시킬 것을 인정한다.

11. 각 당사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기술된 부패 범죄 또는 제4항에 기술된 행위의 방지와 집행을 위한 법 집행 활동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자신의 약속을 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무역과 투자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그리고 제9조 및 제10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 기소 및 사법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sup>8</sup> 각 당사자는 그러한 집행에 관한 자신의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

## 제6조

### 자산 회복과 국제 협력

1. 각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서 확인, 추적, 동결, 압류 및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UNCAC와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UNCAC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의 수익 또는 그러한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

나. UNCAC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수단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그리고 UNCAC에 합치되게 다음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 당사자가 내린 몰수 명령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sup>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반부패 및 그 밖의 관련 법의 집행과 관련된 개별 사건 또는 특정한 재량적인 결정은 각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과 법적 절차에 따름을 인정한다.

나. UNCAC의 제54조(몰수에서의 국제 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메커니즘)를 포함하여, UNCAC에 합치되게 요청 당사자가 내린 동결 또는 압수 명령에 따른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를 허용한다. 그리고

다. 궁극적으로는 몰수를 할 목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항목을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한다.

3. 각 당사자는 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하고 전송할 수 있는 역량 및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협력을 지시하고 증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중앙 당국과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을 설치하고 적절한 경우 강화한다. 각 당사자는 뒷받침이 잘된 사법공조 요청의 전송을 보장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중앙 및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직원이 국제 사법 공조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자신의 중앙 당국과 적용 가능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을 또한 강화한다.

4. 각 당사자는 UNCAC에 합치되게 그리고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음을 위하여 조치를 하고 다른 당사자들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가. 범죄인 인도와 입국 거부를 포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부패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대하여 달리 책임이 있는 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거절함으로써 그러한 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나. 사법공조 및 자산 회복을 포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범죄 수익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거절함으로써 범죄 수익의 회복을 촉진 한다.

5. 각 당사자는 회복된 범죄 수익의 반환 및 처분에서 UNCAC에 합치되게 그리고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는 이전 및 수령 국가 모두의 국민에게 반환된 범죄 수익의 이전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각 당사자는 적절하고 자신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부패 공무원으로부터 회

복된 범죄 수익의 반환 절차, 특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확인과 회복된 범죄 수익의 이전, 처분 및 운영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에 비정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UNCAC와 합치되고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기저가 되는 부패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몰수된 범죄수익의 처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UNCAC, 특히 UNCAC의 제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제5항에 합치되게 몰수 및 반환된 범죄 수익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 운영 및 감시를 증진하는 사안별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 제7조

### 민간 부문 내부통제, 윤리 및 준수

1.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데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존재, 원인 및 심각성과 그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협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는 예를 들어,

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에 대한 무관용에 기여하는 대중홍보활동 및 공공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방지, 적발 및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규모, 법적 구조 및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 및 집행과 같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윤리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우수 관행을 확인, 전파 및 옹호할 수 있다.

다. 다자간 기업윤리 노력, 기업윤리 집단 행동 체계 및 자발적인 공동의 분야별 윤리 강령을 권장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증진할 수 있다.

라. 뇌물 수수를 포함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이 자신의 연례 보고서에 서술을 포함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마.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일환인 것을 포함하여, 법의 잠재적인 위반을 신고하는 개인과 그러한 신고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기업이 이행하고 그러한 신고에 기초하여 기업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전문직 협회와 그 밖의 비정부 기구가 적절한 경우, 기업(특히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뇌물을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강령, 행위 기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 및 요구를 포함한 부패에 관한 자신의 국내법 그리고 국내외 뇌물 수수 및 관련 부패의 위험에 관하여 민간 부문, 특히 국제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인식을 높인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공무원에 대한 선물, 환대, 접대 및 경비를 규율하는 자신의 조치를 개인 및 기업이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웹사이트에 공표하기로 약속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집행 당국이 부패 범죄에 대하여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부정행위의 자발적인 공개 및 법 집행 당국과의 협력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당국은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결정 시에 그러한 프로그램, 공개 및 협력의 존재를 경감 요소로서 다루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기업의 규모, 법적 구조,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그들이 다음을 하도록 권장한다.

가.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의

방지와 적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시 기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나. 기업의 회계 및 요구되는 재무제표는 적절한 감사 및 인증 절차를 따름을 보장한다.

## 제8조

### 수익 소유권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1. 이 조의 목적상, 법인이란 금융 기관과 영구적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거나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외의 실체를 말한다. 그러한 실체는 회사, 법인, 재단, 안스탈트 (anstalt), 파트너십, 협회와 그 밖의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FATF의 관련 권고와 합치되게 다음을 약속한다.

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유형의 법인 및 그 당사자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한다.

나.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법인의 수익 소유권 투명성과 관련된 개정을 포함한 법인의 투명성 및 수익 소유권에 관하여 2022년 3월 FATF 총회에서 채택된 FATF 권고 24호와 그 주제에 대한 개정을 중점으로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다. 법인의 기본 및 수익 소유권 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제공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 체계 및 운영 체계의 격차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항목을 확인하고, FATF 권고 24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조치를 수정하기로 약속한다.

4. 각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가. FATF 기준에 합치되게, 부패 행위자가 그들의 부패행위의 수익금을 그 당사자의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나. 부패 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시장 남용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 제9조

### 부패 범죄의 신고인

1. 각 당사자는 제5조에 기술된 조치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확인하고 그러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2. 각 당사자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를 신고하는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되는 신고 제도 및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법에 합치되는 비밀 고발 제도 또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러한 제도 또는 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어떠한 인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을 적절한 경우 익명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의심되는 사건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한 개인을 차별적이고 보복성이 있거나 부적절한 징계 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자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의심되는 사건의 징후를 발견한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에게 이러한 발견을 발행인의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업의 감시 기구에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각 당사자는 또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그러한 신고를 받은 발행인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신고에 대응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6. 각 당사자는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에게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기술된 범죄 또는 제5조제4항에 기술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의심되는 사건을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그러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의심되는 사건을 합리적인 근거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한 외부 감사인이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신고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0조

###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sup>9</sup>

1.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공무원의 청렴성, 정직 및 책임감을 증진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적절한 경우, 공적 기능을 바르고 명예로우며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공무원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수행 시 부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증진
- 나. 그 당사자가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여기는 공직에 대하여, 공무원의 선별과 훈련을 위한 적합한 절차의 제공
- 다. 공공 조달을 포함한 공적 기능의 수행 시, 공무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

<sup>9</sup> 호주와 미국의 경우, 이 조는 중앙 수준의 정부에서만 적용된다.

- 라. 고위 공무원 및 그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공무원에게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공무원으로서 기능 수행에 대하여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활동, 취업, 투자, 자산 및 상당한 선물 또는 혜택에 관한 신고를 적절한 당국에 하도록 요구
- 마. 공무원이 공적 기능의 수행 시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이 그러한 행위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장려 또는 요구
2. 각 당사자는 정부 조달에 종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의 충돌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공무원이 공적 기능을 바르고 명예로우며 적절하게 수행하고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 또는 기준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 합치되는 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경우, 징계 또는 그 밖의 행동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유념하면서, 이 절에 기술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은 공무원이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해직, 정직 또는 전보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자는 UNCAC의 제11조(사법부와 기소 기관에 관련된 조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확인한다.

## 제11조

### 정부 조달에서의 청렴성 및 투명성 증진

1. 이 조의 목적상, 공급자란 조달 기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2. 각 당사자는 UNCAC의 제9조(공공 조달과 공공 재정 관리)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

무를 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공공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조치에 대한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정부 조달 및 공공 재정 관리에 관한 우수 관행을 다른 당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정부 조달에서의 부패, 사기 및 그 밖의 불법 행위를 다루기 위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정부 조달에서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입찰자가 조달 기관에 수익 소유권 정보를 밝히고 낙찰받은 공급자가 수익 소유권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조달 기관이 그러한 수익 소유권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청렴하게 운영하고 우수한 사업 관행을 지닌 공급자와의 계약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나 절차는 공급자(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규모와 부패, 사기 및 그 밖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낙찰받은 공급자에게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입찰서류상의 규정 또는 그 밖의 관련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6. 당사자가 자격 정지 또는 금지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패,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급자의 정부 조달 참가 자격의 정지 또는 금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자격의 정지 또는 금지의 기간, 범위 또는 적용을 낮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공급자의 기존의 내부통제, 윤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패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공급자가 개발한 경감 요소 또는 구제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7. 각 당사자는 정부 조달의 전 과정에 걸친 부패의 방지, 적발 및 억제에 대한 지침이나 훈련을 이용 가능한 자원 안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적절한 경우, 다음에 대한 지침이나 훈련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격의 정지 및 금지 또는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고 인정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 그리고

- 나. 자격의 정지 및 금지 또는 대안적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내부통제, 윤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방법
8. 당사자가 자격 정지 또는 금지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격의 정지 및 금지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다. 이는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에 관한 절차의 개시,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절차의 사유에 대하여 통지하고, 공급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9. 당사자가 자격 정지 또는 금지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부패,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 등으로 그 당사자가 자격을 금지 또는 정지하거나 부적격으로 선언한 인의 명단을 배포하거나 공표하고 갱신한다.

## 제12조 반부패 노력에 대한 사회 참여 증진

1. 각 당사자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단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지역사회기반기구, 사업자 단체와 산업협회를 포함한 기업(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원주민, 장애인, 비도시 지역 및 벽지 주민, 소수 집단,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같은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이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데 활발히 참여하도록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존재, 원인 및 심각성과 그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내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UNCAC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여와 특히 독립적이고 보복의 우려 없이 운영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여건을 촉진함으로써, 언론을 포함한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이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 척결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증진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3. 각 당사자는 UNCAC 제13조(사회의 참여)를 포함하여 UNCAC에 합치되도록, 뇌

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 · 수령 · 공표 ·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보호하고자 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법 및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언론이 부패를 기록하고 보도하며 폭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괴롭힘, 협박 및 폭력에 대하여, 언론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13조

#### 반부패 검토 절차의 강화

1. 각 당사자는 UNCAC 이행 점검 체제(UNCAC 국가별 평가)에 따라 자신의 UNCAC 국가별 평가를 시기적절하게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UNCAC 국가별 평가의 투명성과 포용에 대하여 약속한다. 이는 자신의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공표하고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을 이행 점검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UNCAC 국가별 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반부패 기술지원의 제공 및 그러한 지원에 대한 수요에 관한 정보를 그 밖의 당사자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4. 각 당사자는 UNCAC 국가별 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반부패 기술 지원에 대한 우선 수요를 자신의 국가 반부패 전략에 통합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 계획을 수반할 것을 고려한다.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UNCAC 국가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적절한 경우 보고서의 권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노력에 대한 현황을 그 밖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 제14조

#### 반부패, 투명성 및 노동법 집행

1. 노동법의 이행 및 집행의 맥락에서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방지와 척결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각 당사자는 ILO 선언에 기술된 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ILO 회원국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노동권이 존중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가 노동 보호에 대하여 특히 아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의 노동법에 따라 아주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아주 노동자에 대한 채용 수수료의 부과 및 관련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3. 노동권을 침해하는,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사용자 및 적절한 경우 사용자의 대리인과 사용자 협회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sup>10</sup>

가. 피고용인들이 노조 가입 여부 또는 자신의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 저해, 또는 강압하는 것, 그리고

나. 결사의 자유 또는 단체 교섭권의 행사에 부정직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근로자 단체, 노동 단체, 근로자 단체나 노동 단체의 근무자 또는 대표, 또는 근로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가치를 지닌 것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sup>11</sup>

4. 각 당사자는 특정한 사안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sup>1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ILO 선언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에 대한 의무 및 약속에 합치되게 해석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반부패 관련 조치, 노동 관련 조치, 또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조치나 금지를 통하여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sup>1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 금전 또는 그 밖의 가치를 지닌 것의 약속 또는 지급은 이 호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판소는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 재판소, 준사법 재판소, 사법 재판소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노동법 집행을 위한 이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나.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그리고

다. 불합리한 수수료나 시간 제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서의 모든 심리가, 법 운영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자는 자신의 노동법과 집행 및 준수 절차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동법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7.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부 조달 제도가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 권리에 불합치하는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8. 당사자들은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상응하여,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다루고 공공 부문 청렴성 조치의 수립 및 집행을 포함하여 노동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3절  
조세

## 제15조 적용범위

1. 이 절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경제에 충격을 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국제 조세 사안에 적용된다.
2. 그 밖의 모든 협정, 이니셔티브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 절에 표현된 어떠한 지원도 당사자가 그러한 협정, 이니셔티브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절의 목적상, 모든 협정, 이니셔티브 또는 사업은 그러한 협정, 이니셔티브 또는 사업의 당사자이거나 참여자인 당사자에만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4. 이 절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에 대한 것과 같은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 조세 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 제16조 투명성 및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

1. 당사자들은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에 법적 권한을 제공하는 적용 가능한 조세협약(적용 가능한 조세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기초한 조세 목적상 권한 있는 조세 당국 간의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제4절에 합치되게, 당사자들은 교환된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증진된 역량과 전문 지식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교환된 정보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관할권 간 증진된 협력을 기초로 한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에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적용 가능한 조세협약에 따른 기밀성 및 데이터 보호 표준의 충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관할권이 금융 계좌 정보의 자동 교환과 같이 권한 있는 조세 당국 간 조세 목적상의 정보 교환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OECD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작업을 지지한다.

4. 당사자들은 조세 목적상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전 세계적 표준에 대한 필수적 부가물로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지지한다.

## 제17조 국내 자원 동원

1.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하기 위한 전 세계적 · 지역적 노력을 지지한다.

2. 당사자들은 관할권이 조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거나 건전한 조세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전 세계적 ·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요청한다.

가. OECD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실시하는 아시아 이니셔티브 및 태평양 이니셔티브

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조세 협회

다. OECD 공유 정보 및 협력에 대한 국제 공동 태스크포스

라. OECD 국제행정포럼

마. 아시아태평양 국제 행정 및 조사 연구반, 그리고

바. OECD와 유엔개발계획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3. 당사자들은 역량의 강화, 향상 및 개발이 행정적 부담, 비용 및 분쟁의 경감뿐만 아니

라 조세법을 집행하고 세입을 징수하며 자발적 납세자 순응을 개선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러한 국가들에 이익이 되며, 이 모두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행정 및 분쟁 해결 비용의 경감 및 국내 거주 납세자를 위한 보다 건전한 국제 사업 환경을 통하여 선진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제18조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두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한 역량 강화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두 가지 해결 방안 (OECD/G20 두 가지 해결 방안)에 관하여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에 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현대의 세계화된 경제와 국제 조세 체계에 부합하는 숙련되고 효율적인 조세 행정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OECD/G20 두 가지 해결 방안의 이행이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임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존의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거나, 다른 당사자들의 능력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양자 모두를 함으로써, 조세 행정과 관련하여 제4절에 규정된 역량 강화를 지지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투명성 및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과 관련된 제16조와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제4절이 OECD/G20 두 가지 해결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운영에도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4. 당사자들은 OECD/G20 두 가지 해결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이 투명성의 확대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제4절

####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포용

## 제19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절은 이 협정을 이행하고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적용된다.
2. 당사자들은 반부패 및 조세와 관련된 국제 협정 및 표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는 데, 전문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제도적 역량의 개발, 혁신 기술의 보급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것을 포함한 포용 증진이 요구됨을 인정한다.

## 제20조 당사자들 간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공유

1. 역량 강화, 기술 혁신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관련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다.
  - 가. 제2절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 공유, 그리고
  - 나. 제3절과 관련된 자신의 조세 당국들 간 공유
2. 당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를 방지, 적발 및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 조정 및 정보 공유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특히, 당사자가 관련 관할권 내 권한 있는 당국이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와 관련된 질의 및 형사 절차를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정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전 요청 없이, 적절한 경우 그리고 그들 각자의 국내법을 저해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정보의 동시 전송 기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들은 UNCAC 당사국 총회 및 그 실무 협의단,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 상거래상 뇌물 수수에 대한 OECD 작업반(OECD 뇌물방지작업반), APEC 반부패 투명성

전문가 작업반, G20 반부패 실무그룹 및 FATF와 같은 그 밖의 다자 및 지역 기구를 통한 것을 포함하는 국제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 및 외국에서의 뇌물 수수를 범죄화하고 관련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한다.

5.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의 국경 간 이동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부패 조사의 대상이거나 달리 이에 연루된 개인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한다.

6. 제3절에 기술된 대로, 당사자들은 적용 가능한 다자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공개에 대한 규제에 따라 그리고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조세 목적상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7. 각 당사자는 금융 정보 공유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자금세탁,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한 국제 협력을 신속하게, 건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각 당사자는 각 경우에 협력에 대한 적법한 근거에 따라, 그러한 금융 정보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요청에 따라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 제21조

### 역량 강화, 기술 보급 및 협력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협정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서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상응하여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작업하기로 합의한다. 역량 강화 체계는 이 협정의 기초가 되는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규정에 대한 원칙, 방식, 수요 파악 및 절차를 규정한다

2. 당사자들은 자신의 국내 반부패 법과 정책을 개발, 이행 및 집행하는 데 다양한 경험

과 우수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한 있는 반부패 당국 및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이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한 기술 협력 활동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다수의 양자 및 다자 포럼에서 실무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이 다음 사이의 노력을 포함하여 그러한 포럼에서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자신의 권한 있는 반부패 당국 및 반부패 법 집행 기관

나. 자신의 권한 있는 조세 당국, 그리고

다. 국제적 법 협력에 대하여 자신의 중앙 당국 및 권한 있는 당국

4. 당사자들은 특히 효과적으로 다음을 하기 위하여, 역량 강화 체계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서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뇌물, 자산 회복 및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한다. 그리고

나. 국제 조세 사안에 대하여 협력한다.

5. 당사자들 간 정보 및 전문 지식의 교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반부패 약속의 이행(그 이행에 수반되는 도전과제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포함한다)을 논의하기 위한 반부패 집중 조정 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한다.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한 다른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나. 제14조의 이행(그 이행에 수반되는 도전과제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포함한다)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화상회

의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한 다른 수단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관련 회의와 조정하여 개최될 수 있고, 또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 간 다른 회의에서의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호에 따른 회의와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제8조에 따른 IPEF 노동권 자문 기구 회의가 같은 해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그 회의는 가능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적절한 경우 자금 세탁 방지를 포함하여, 우수 관행, 사례 조정 또는 그 밖의 주제와 같은 이 협정과 관련된 반부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UNCAC 당사국총회 및 그 실무 협의단,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APEC 반부패 투명성 전문가 작업반과 반부패 당국 및 법 집행 기관 네트워크, OECD 뇌물방지작업반과 반부패 법 집행 당국 간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와 같이 당사자들이 회원이 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실무 협의단 또는 회의를 계기로 당사자들이 별도의 회합을 개최할 기회를 고려한다.
6. 당사자들 간 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제3절의 이행과 그 이행에 따르는 도전과제, 그리고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 당국 간 조세 집중 조정 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 당사자들이 다른 수단을 통하여 회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7. 당사자들은 정부 조달에서의 경우를 포함하여,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의 방지, 적발 및 척결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설계,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8. 당사자들은 정부 조달 분야에서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 척결을 위한 각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특히 관련된 조달 담당 공무원의 훈련에 대하여 서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훈련은 정지 및 금지, 청렴성,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관행 및 기술 혁신의 활용이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의 경감을 포함할 수 있다.
9. 당사자들은 전문 지식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할 것과, 반부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에서의 양성 평등 및 여성 권한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10.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국내 조치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며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 제22조

### 이 협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공공 부문 외 개인과 집단, 비정부기구, 사업자 단체와 산업협회를 포함한 기업, 학계 및 근로자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는 회의 또는 원탁 토의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이 협정의 목적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조정을 심화하기 위한 민간 분야와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3. 당사자들은 비정부 이해관계자, 근로자 단체, 그리고 특히 민간 부문이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 간의 역량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환영한다.

## 제23조

### 이행, 책임성 및 감시

1. 각 당사자는 제2절 및 제3절을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당사자들이 수립할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린다.

2. 당사자들은 역량 강화 체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할 상호 정보 교환 제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자 한다.

## 제5절

### 일반규정 및 최종규정

#### 제24조

##### 협의

- 한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의 이 협정 조항의 이행에 우려를 가지는 경우,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하며, 그 다른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응답한다.
-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그 요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즉시 통보한다.
-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요청과 그 다른 당사자의 답변이 요청의 대상이 되는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답변의 접수일 후 60일 이내의 상호 결정된 날짜에 협의가 개시된다.
- 협의 당사자들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사자들(비협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지의 내용은 협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결정된다.
- 협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답변 접수일 후 120일 이내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은 채 협의가 종료되는 경우, 협의 당사자 또는 협의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협의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비협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제1항에 언급된 서면 협의 요청 및 그 답변의 사본을 즉시 비협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 제5항에 언급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임시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각 비협의 당사자는 요청일 후 30일 이내에 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임시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각 비협의 당사자는 자신의 지명자 및 그 지명자로의 의사소통 전달 수단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임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진 날 후

45일째 되는 날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임시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서면 통보 및 답변 그리고 서면 제출 자료를 포함한 협의 당사자들의 견해를 유념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가. 사실과 협의 당사자들의 견해를 포함한 사안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당사자들이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장려한다.

8. 협의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위원회는 협의 당사자들의 검토를 위하여 조언을 제공하거나 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 당사자들은 제안된 해결을 수락 또는 거부하거나 다른 해결에 대하여 상호 결정할 수 있다.

9. 협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도달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임시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 제25조

### 와이팅이 조약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팅이 조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뉴질랜드가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그 밖의 당사자들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와이팅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팅이 조약의 해석이 제24조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24조는 이 조에 달리 적용된다.

## 제26조

##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다른 국제협정상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경우
- 나. 자신의 법에 반하거나 달리 자신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
- 다. 자신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 라. 자신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27조

### 이행

이 협정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이행된다.

## 제28조

### 비밀유지<sup>12</sup>

1.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고, 그 정보가 비밀 영업정보라는 점을 포함한 이유로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를 공공지식 사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공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다.

<sup>1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공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내 법원에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을 것이다. 수령 당사자는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이러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이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3. 이 협정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임시위원회의 요약본, 조언 또는 제안된 해결을 포함하는, 제24조에 따른 절차와 관련하여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지정되고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제29조 접촉선

1.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발효일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식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전체 접촉선 및 접촉선으로의 의사소통 전달 수단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하나 이상의 접촉선 또는 전달 수단의 모든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으로의 의사소통은 기탁처에 통보된 수단을 통하여 그 접촉선에 전달된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30조 발효

1. 이 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

탁처에 기탁된다.

3. 이 협정은 제1항에 기재된 국가들 중 최소 5개 국가가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섯 번째 기탁일 후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제출한 제1항에 기재된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31조

#### 탈퇴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언제든지,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탈퇴는 기탁처가 서면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후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이 보유하며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이 협정을 탈퇴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 제32조

####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개정에 대한 자신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30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 제33조

#### 가입

-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 간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가입 당사자가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가입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또는 제30조제1항에 기재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 제34조

#### 기탁처

-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 미합중국에 기탁된다.
- 기탁처는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 기탁처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기탁된 모든 통보 또는 문서를 모든 서명자와 당사자에 신속하게 알리고, 그 날짜와 사본을 제공한다.

### 제35조

#### 부속서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연, 월, 일]에 [장소]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 부속서 1

### 역량 강화 체계

#### 1.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원칙

- 가. 당사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반부패 및 조세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의 그리고 진행 중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인정한다.
- 나. 당사자들은 수요 중심의,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우선순위 및 수요에 기반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다.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의 관련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유연하고 시기적절하며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가능한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이 협정의 이행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 라.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 1)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의 강화** – 적용 가능한 경우,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는 당사자의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에 합치되며 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국내 상황의 반영** –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는 수혜 당사자의 국내 법 체계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포괄적 접근 추구** –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는 문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문제의 한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4) **공여자 간 조정 및 중복 지원의 방지** –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는 중

복을 피하고, 비공식적일 수 있는 정기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여자 및 이행 파트너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당사자의 당국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설계 및 이행에서 그 장기적 수용성, 효과성,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와 조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제공 및 수혜와 관련하여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2.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방식

가. 제1항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제공 및 수혜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은,

1) 기존의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포함하여, 견고한 반부패 제도에 기여하고 조세 행정 및 감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당사자들 간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2)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및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주목한다.

나. 당사자들은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법 체계 개혁의 지원, 수요 평가의 개발, 기술 조언 및 멘토링 제공, 훈련 · 워크숍 · 세미나 · 온라인 세미나 · 회의를 통한 협력,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의 참여, 우수 관행 및 서면 지침의 공유, 그리고 전문가 교류 · 파견 근무 ·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 장학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정부에서 정부로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 양수인 또는 계약자와 같은 제3자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라. 당사자들은 반부패 또는 조세 문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보유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의 장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 마. 당사자들은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제공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반부패 및 조세 문제에 대한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또는 다자적인 기존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노력 및 이니셔티브와 조정된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 바. 당사자들은 이 역량 강화 체계를 포함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밖의 다른 협정이나 약정상 반부패 또는 조세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기존의 또는 계획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3.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의 파악
- 가. 당사자에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을 통하여 그러한 수요를 매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려야 할 것이다.
  - 나. 당사자들은 수요 평가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을 인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존의 수요 평가에 의존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약정 가입 시 수요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개발하거나 수행하도록 장려된다.
  - 다.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러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적절한 약정의 수립을 목표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수요 및 우선순위를 적시한 서면 요청을 다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 또는
  - 2)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 라.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다호2목에 따른 약정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4.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제공
- 가.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상이한 발전, 자원 및 능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재정 지원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을 통하여 매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리고자 한다.
  - 나.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목표가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또는 관련 국제기구, 양수인 또는 계약자를 통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수혜를 규정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 다.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가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로 제공될 것임을 인정한다.

5.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의 설치 및 의무

- 가. 당사자들은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상의 접촉선 또는 각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각 당사자 의 정부 대표 또는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을

설치한다.

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고려한다.

2) 제3항에 따라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요청을 당사자들로부터 수령하고,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하며, 적절한 경우 연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당사자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3) 이 역량 강화 체계에 따라 제공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하고 공유한다.

다.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은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라.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 대표 또는 대표들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하고, 그 후 자신의 대표 또는 대표들의 모든 변동 사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에 통보한다.

마.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 당사자로서 2년의 임기를 수행할 당사자를 컨센서스로 결정한다. 조정 당사자는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반의 활동을 관리한다. 당사자들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이 제21조에 따른 당사자 회의와 동시에, 최소 연 1회 회합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조정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는 당사자들이 2년마다 교대로 맡도록 하고자 한다.

- 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0일 이내에, 그리고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의 컨센서스로 승인을 받아,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정반은 그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수립한다.

## 부속서 2

### 경과기간

1.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피지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8년 내에 다음의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

가.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나. 제9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의 2문, 그리고

다.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의 2문,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제7항

2.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8년의 경과기간 동안,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24조에 따른 협의를 피지에 요청할 수 없다. 그리고

나. 피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린다.

3. 피지가 8년의 경과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1항 가호,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규정들 중 하나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경우, 제2항은 그 규정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